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자치법규 준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710호
- 나. 제출자 : 고영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5. 5. 29.
- 라. 회부일자 : 2025. 5. 29.

## 2. 제안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있어 표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법제처 자치법규 일제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두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조항의 내용을 삭제함(안 제1조~제2조)

연번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5조 제2항	· 단서 조항(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삭제	자치행정과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 단서 조항(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삭제	기획예산과

####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2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장이 두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가부동수인 경우 안건은 부결되는 것이 원칙이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표결 원칙에 반하므로 해당 개정은 타당함
-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2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37호, 2022. 4. 20., 일부개정]

### 제22조(자치법규 정비)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수정·보완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구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